

##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점에 따른 보험료 수입부족액 추정

### 1. 서론

국민연금재정의 건실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분석이 있어 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급여산식의 불합리성을 들 수 있다. 즉, 보험료부담과 급여간의 수준차이로 인해 연금재정을 압박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8년에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산식을 수정하여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간입에 소득대체율이 70%이던 것이 60%로 떨어졌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당시 이와 같이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한 것은 제도도입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元鍾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후세대가 현세대에 의해 조성된 연금재정적자분을 부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시절과 같이 두 자리수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도도입 당시의 전망은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정부는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취보아도 연금재정적자의 과도한 후세대 전가는 연금제도의 근본을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도 현세대의 문제는 현세대가 해결하는 수지균등의 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연금제도의 개혁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본 글에서는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건전한 연금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재정재계산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 2. 연금제도의 현황

1988년 도입당시 443만명수준이던 가입자가 1999년 4월 도시지역자영자의 확대가입으로 인해 1999년말 현재 1626만명을 넘고 있다. 이로서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8년 도입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1995년에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사업장가입자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4~8%수준으로 증가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4.5%가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경제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전년대비 8%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변화

(단위: 명)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1988	4,432,695	4,431,039	1,656
1990	4,651,678	4,640,335	11,343
1992	5,021,159	4,977,441	43,718
1994	5,444,818	5,382,729	62,089
1996	7,425,700	5,677,631	1,748,069
1998	6,580,265	4,849,926	1,730,339
1999	16,261,889	5,238,149	11,023,74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9.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부담과 급여간의 수준차이가 큰 상태에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그만큼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므로 전국민이 국민연금제도권으로 흡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확대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1999년 현재 보험료수준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9%를 부담하고 있다. 제도도입당시인 1988년에는 보험료가 3%이었으며, 1993년에 6%, 그리고 1999년부터 9%의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수준인 9%도 급여산식에서 보장하는 급여수준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보험료가 3%, 또는 6%였던 1998년 이전 기간에는 연금재정의 적자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부담과 급여간의 수준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표 2. 국민연금 가입종별 보험료율

(단위: %)

연도	사업장종사자			사업장 중사임의 계속가입자	연도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
	사용자	근로자	보험료			
1988~1992	1.5	1.5	3	3	-	-
1993~1998	3	3	6	6	-	-
1999	4.5	4.5	9	9	1995~2000. 6.	3
2000	4.5	4.5	9	9	2000. 7.	4
2001	4.5	4.5	9	9	2001. 7.	5
2002	4.5	4.5	9	9	2002. 7.	6
2003	4.5	4.5	9	9	2003. 7.	7
2004	4.5	4.5	9	9	2004. 7.	8
2005~2009	4.5	4.5	9	9	2005. 7.	9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령집』, 1999.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9%까지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씩 인상되어 2005년에 9%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다음세대에서도 지속가능

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급여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급여수준이 수지균등원칙하에서의 급여수준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확정각출보험료수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급여수준을 내리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 재정재계산의 시점 즉, 보험료의 인상시점이 연금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 3.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현행 국민연금급여산식<sup>1)</sup>에 의하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또한 표준소득월액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준소득월액은 45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최하등급인 1등급은 월소득 220,000원이며 최고등급인 45등급은 3,600,000원이다. 연금보험료는 자신의 소득등급에 따라 납부하지만 은퇴후 지급받는 급여는 자신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표 3. 표준소득등급별 소득대체율

(단위: 원)

등급	표준 소득월액	보험료		국민연금 가입기간별소득대체율				완전 노령연금 <sup>1)</sup> (30년간입)
		지역(3%)	사업장(9%)	20년	30년	35년	40년	
1	220,000	6,600	19,800	0.86	1	1	1	220,000
5	260,000	7,800	23,400	0.79	1	1	1	260,000
10	370,000	11,100	33,300	0.67	1	1	1	370,000
15	570,000	17,100	51,300	0.50	0.75	0.87	1	427,790
20	850,000	25,500	76,500	0.38	0.57	0.67	0.77	490,790
25	1,210,000	36,300	108,900	0.31	0.47	0.55	0.63	571,790
30	1,660,000	49,800	149,400	0.26	0.40	0.47	0.54	673,040
35	2,190,000	65,700	197,100	0.23	0.36	0.42	0.48	792,290
40	2,800,000	84,000	252,000	0.21	0.33	0.38	0.44	929,540
45	3,600,000	108,000	324,000	0.20	0.31	0.36	0.41	1,109,540

주: 1) 완전노령연금액은 1999년 현재 불변가치에상액이며 6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 19년, 65세에 수령하는 경우 15년간 수령하는 것을 예상한 액수임.

1) 1999년 1월 1일 이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급여산식은  $2.4(A+0.75B)$ 이며, 이후 가입기간은  $1.8(A+B)(1+0.05N)$ 임. 여기서 A는 연금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가입자전체의 평균치),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N은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가입연수임.

퇴직당시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장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를 반영한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최하등급인 1등급자의 월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9,800원이고, 30년을 가입한 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은 1999년 불변가격으로 220,000원이 된다. 즉, 자신의 평균보수월액만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가 된다. 이와 같이 소득대체율이 100%인 즉, 자신의 표준보수월액만큼 매월 지급받는 계층은 30년 가입기준으로 10등급까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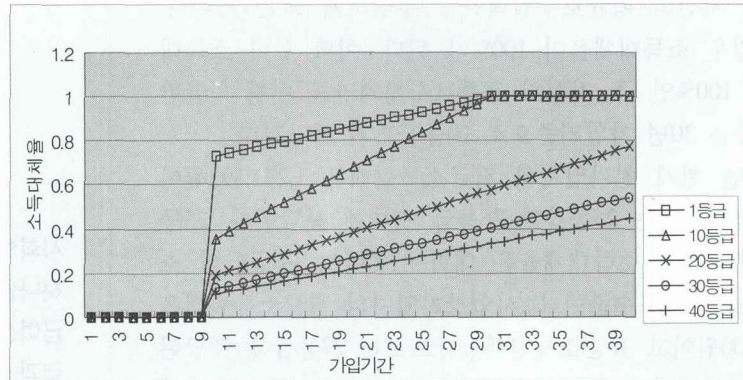
1999년 현재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271,595원이며 등급상으로는 25등급과 26등급 사이에 해당된다. 25등급의 30년가입 소득대체율은 대략 47%이고, 26등급의 소득대체율은 45%수준이다.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380,000원이고 표준소득월액등급으로는 27등급에 해당된다. 사업장가입 25등급자의 경우 월평균 108,900원을 부담하고 은퇴후 수령하는 월연금액은 571,790원이 된다.

이와 같이 소득등급별 소득대체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연금소득대체율은 10년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림 1]의 제일 밑에 있는 선이 40등급자의 소득대체율선이고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최하위 등급인 1등급자의 소득대체율선이다. 표준보수월액등급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올수록 소득대체율선의 기울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입기간 10년이 되는 동시에 발생하는 소득대체율 또한 표준보수월액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를 급여산식에 반영시킨 결과이다. [그림 1]에서 흥미로운 점은 45등급에서 10등급으로 갈수록 소득대체율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만 10등급에서 1등급에서는 기울기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회보험 기능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를 급여산식에 반영시킨 결과, 가입기간 10년이 되는 동시에 발생하는 소득대체율이 표준보수월액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것은 동일한 가입기간에 대해 1등급자가 10등급자에 비해 절대적인 소득대체율은 높지만 1년을 추가로 가입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소득대체율의 증가는 1등급자보다 10등급자가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에서 30년 이내에서의 근로유인효과는 1등급자보다 10등급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림 1. 소득등급별 가입기간에 대한 소득대체율 증가율



#### 4. 국민연금급여수준과 확정각출연금급여간의 수준비교

[그림 1]과 <표 3>에서와 같이 소득대체율에 의한 급여액이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 낮은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료수준에 비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게 보장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아는 것이 대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만약 국민연금이 확정각출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확정각출형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수입을 운영하여 보험료수입원금과 적립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합한 적립금에 기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자소득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각출방식하에서 30년을 가입하는 경우 3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매월 일정한 연금급여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30년 가입자가 60세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약 19년간 급여를 수령하고 사망하는 경우 30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은 소진되어 잔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불입한 보험료

와 보험료의 이자수익의 60세 당시 합계는 60세 이후 평균 기대수명(19세) 동안 수령할 연금급여액의 60세 당시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확정각출형하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은 자신의 수지균등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은 자신의 수지균등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확정각출방식하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방식이 과도하게 후세대 전가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의 연금급여는 현세대가 불입한 보험료수입으로 해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현재의 보험료수준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며, 혹은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2]는 평균소득자라 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26등급자가 현재의 보험료수준인 9%를 내는 경우 가입연수에 따른 소득대체율이 확정각출형하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9%보험료를 내고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35년가입에 약 27%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계산은 임금상승률이 연 4%, 그리고 이자율이 연 4%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추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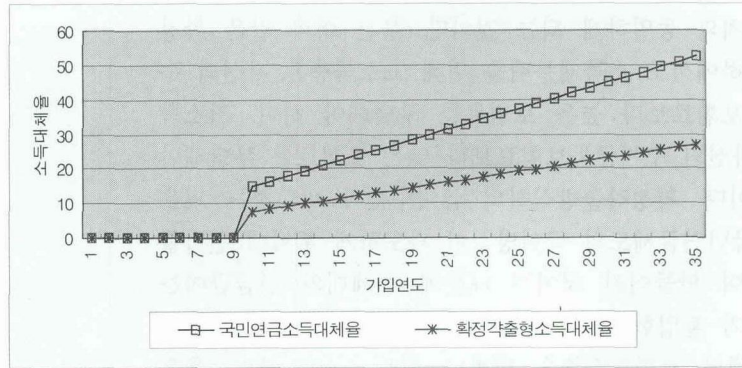
[그림 2]의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 35년가입에 52%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어 두 방식간의 소득대체율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현재 평균소득자인 27등급자가 9%의 보험료로 앞으로 3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보험료수입총액과 그 총액에서 지급될 수 있는 월급여액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득월액이 연평균 4%로 인상되고 보험료수입에 대한 이자수익이 연간 4%라 할 때 10년후 보험료와 이자수익의 합계는 22,016,560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62세부터 17년간 지급될 수 있는 월 급여액은 151,119원이 된다. 이와 같은 계산은 가입종료후 바로 62세가 되어 대기기간

확정각출형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수입을 운영하여 보험료수입원금과 적립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합한 적립금에 기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자소득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림 2. 국민연금 대비 확정각출연금의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이자율 4%)  
(단위: %)



없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62세를 지급개시 연령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지급개시연령이 2013년 이후 5년간 1년씩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62세부터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1999년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60세의 기대여명이 19.52년, 65세의 기대여명이 15.75년 이므로 62세의 기대여명을 17년으로 정하여 17년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 평균소득자가 35년을 가입하는 경우 월급여액은 약 1,410,005원이 된다. <표 4>에서 평균소득자가 보험료를 18%로 불입하는 경우 35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의 총액은 411,687,573원(35년후 경상가치)이 되고 월급여액은 약 2,820,009원이 된다. 예를 들어, 임금상승률 4%, 이자율 5%를 가정할 경우 35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52%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정각출 보험료는 14%가 되어야 하고, 임금상승률 4%, 이자율 6%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11%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소득대체율은 이자율의 가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5. 현행 국민연금과 확정각출방식간의 보험료수입차액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에 의한 보험료수준은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는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가정별로 부족한 보험료수입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사업장가입자에 국한해서 분석을 해 보았다. <표 5>는 1999년말 현재



표 4. 확정각출형<sup>1)</sup>에 의한 보험료수준별 월급여액 및 소득대체율

가입 연수	표준보수 월액	보험료 9%, 62세 수령개시, 17년간 수급			보험료 18%, 62세 수령개시, 17년간 수급		
		연간보험료 +이자수익 (누적)	월급여액	소득 대체율	연간보험료 +이자수익 (누적)	월급여액	소득 대체율
1	1,380,000	1,550,016	-	-	3,100,032	-	-
2	1,435,200	3,224,033	-	-	6,448,066	-	-
3	1,492,608	5,029,491	-	-	10,058,984	-	-
4	1,552,312	6,974,228	-	-	13,948,458	-	-
5	1,614,405	9,066,497	-	-	18,132,995	-	-
6	1,678,981	11,314,988	-	-	22,629,978	-	-
7	1,746,140	13,728,853	-	-	27,457,706	-	-
8	1,815,986	16,317,722	-	-	32,635,445	-	-
9	1,888,625	19,091,735	-	-	38,183,471	-	-
10	1,964,170	22,061,560	151,119	7.6	44,123,122	302,237	13.84
11	2,042,737	25,238,435	172,880	8.37	50,476,685	345,760	15.38
12	2,124,447	28,634,141	196,140	9.14	57,268,282	392,280	16.92
13	2,209,424	32,261,132	220,984	9.91	64,522,264	441,969	18.46
14	2,297,807	36,132,468	247,503	10.68	72,064,936	495,005	20.0
15	2,389,713	40,261,893	275,789	11.45	80,523,786	551,578	21.54
16	2,485,302	44,663,860	305,941	12.22	89,327,720	611,883	23.08
17	2,584,714	49,353,565	338,065	12.99	98,707,131	676,131	24.62
18	2,688,103	54,346,984	372,270	13.76	108,693,970	744,540	26.16
19	2,795,627	59,660,912	408,669	14.53	119,321,824	817,339	27.7
20	2,907,452	65,312,998	447,386	15.3	130,625,997	894,772	29.24
21	3,023,750	71,321,794	488,545	16.07	142,643,589	977,091	30.78
22	3,144,700	77,706,793	532,282	16.84	155,413,587	1,064,564	32.32
23	3,270,488	84,488,477	578,735	17.61	168,976,954	1,157,471	33.86
24	3,401,307	91,688,364	628,054	18.38	183,376,729	1,256,108	35.4
25	3,537,360	99,329,061	680,391	19.15	198,658,123	1,360,784	36.94
26	3,678,854	107,434,313	735,911	19.92	214,868,626	1,471,824	38.48
27	3,826,008	116,029,058	794,784	20.69	232,058,116	1,589,570	40.02
28	3,979,049	125,139,488	857,190	21.46	250,278,976	1,714,380	41.56
29	4,138,211	134,793,106	923,316	22.23	269,586,211	1,846,632	43.1
30	4,303,739	145,018,789	993,360	23.0	290,037,579	1,986,722	44.64
31	4,475,889	155,846,959	1,067,532	23.77	311,693,718	2,135,064	46.18
32	4,654,924	167,309,144	1,146,047	24.54	334,618,288	2,290,094	47.72
33	4,841,121	179,439,057	1,229,135	25.31	358,878,114	2,458,271	49.26
34	5,034,766	192,271,669	1,317,037	26.08	384,543,337	2,634,074	50.8
35	5,236,157	205,843,786	1,410,005	26.85	411,687,573	2,820,009	52.34

평균소득자가  
보험료를 18%로  
불입하는 경우  
35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의 총액은  
411,687,573원(35년후  
경상가치)이 되고,  
월급여액은  
약 2,820,009원이 된다.

주: 1) 임금상승률 4%, 연간 이자율 4%를 가정한 경우의 확정각출방식임.

2) 월급여액 = 
$$\frac{\text{연간보험료} + \text{이자수익}}{1 - (1 + r)^{-n}}$$

r: 이자율, n: 수급기간

규모의 사업장가입자가 지속적으로 35년간 가입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들이 35년간 가입후 평균 62세에 급역을 수령하여 17년간 수령하고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즉, 현재 9%의 보험료와 가정별 확정각출보험료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수입의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소득대체율수준은 소득수준별로 달라 평균소득월액별로 분석을 해야 하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전체사업장 가입자를 평균소득자로 간주하여 추계하였다. 따라서 1999년말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수는 5,238,149명이고, 평균소득자의 보험료차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수를 곱하여 보험료수입부족액을 구하였다.

표 5.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수준별 연간보험료수입 부족액(누계)<sup>1)</sup>

(단위: 1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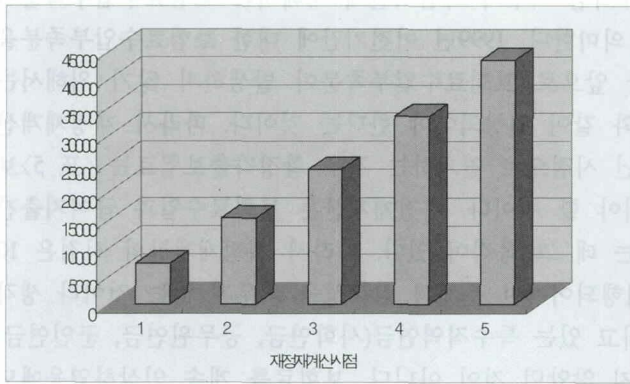
추계기준 시점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수준별 보험료수입부족액				
	임금상승률 4%, 이자율 4%, 확정각출보험료 18%	임금상승률 4%, 이자율 5%, 확정각출보험료 14%	임금상승률 4%, 이자율 6%, 확정각출보험료 11%	임금상승률 5%, 이자율 5%, 확정각출보험료 16%	임금상승률 5%, 이자율 6%, 확정각출보험료 12.5%
2000	7,806	4,337	1,734	6,072	3,036
2001	16,335	9,120	3,666	12,833	6,448
2002	25,559	14,344	5,795	20,287	10,247
2003	35,536	20,048	8,143	28,506	14,475
2004	46,327	26,277	10,731	37,567	19,180
2005	57,999	33,079	13,584	47,556	24,418
2006	70,623	40,507	16,729	58,570	30,247
2007	84,278	48,618	20,196	70,713	36,734
2008	99,046	57,476	24,018	84,100	43,955
2009	115,020	67,148	28,231	98,859	51,992

주: 1) 보험료수입손실액은 확정각출보험료수준과 현행 9% 보험료수준과의 차액을 계산한 것이며, 급역지급개시연령은 62세, 지급기간은 1999년 통계청 생명표를 참조하여 17년으로 하였음.

<표 5>에 의하면 2000년 1년간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수입부족액 즉, 확정각출형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로 인한 수입부족액은 적게는 1조 7천억원(임금상승률 4%, 이자율 6%)에서 많게는 7조 8천억원(임금상승률 4%, 이자율 4%)에 이른다. 현재와 같이 보험료가 9%로 2009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부족한 보험료수입누적액은 적게는 28조 2천억원에서 많게는 115조원에 이른다.

[그림 3]은 보험료가 9%로 앞으로 5년간 계속 유지되는 경우 즉, 재정재계산에 의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경우 부족한 보험료수입(임금상승률 4%, 이자율 4%)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3. 재정재계산 연기에 따른 보험료수입 부족액 (단위: 10억원)



## 6. 결론

현행 국민연금법상에는 2010년 이후에는 재정재계산제 적용으로 연금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재정재계산 시점을 앞으로 10년후로 규정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보험료부족분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재계산 시점을 10년후로 연기한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만을 키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서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현세대가 급여를 수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그리고 그 다음세대까지 지속되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재계산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현세대의 문제를 다음세대에 전가

매년 보험료부족분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재계산 시점을 10년후로 연기한다는 것은 현세대의 문제를 다음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문제의 심각성만을 키울 것이다.

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분석한 것은 현재 3%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배제한 사업장가입자에 한한 보험료부족분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의 1999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수입부족분은 계산되지 않은 결과이다. 보험료를 3%, 6% 내고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70%까지 보장하던 1999년 이전기간에 대한 보험료수입부족분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수입부족분을 합한다면 현시점에서의 보험료부족분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앞에서 추계한 확정각출보험료는 적어도 현재시점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수입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이전기간에 대한 보험료수입부족분을 청산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보험료수입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0년 현재 <표 5>와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재계산 시점을 2000년이 아닌 시점으로 연기하는 경우 확정각출보험료는 <표 5>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재계산은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간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정재계산의 시점은 10년후가 아닌 현재 시행되어야만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였음에도 30여 년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교하게 재정재계산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도 여론을 인식한 단일한 재정재계산정책에서 벗어나서 현세대의 재정불안정문제는 현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만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